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4 - 29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[대통령령 제24914호(2013.12.11)]이 제정, 공포·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
-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14. 2. 3. ~ 2014. 2. 2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